

# 외주 계약서

1. 공사명 : 중국 광전자 PURIFIER 제작공사

2. 공사기간 : 착공 2003년 06월 15일

준공 2003년 08월 31일

3. 계약금액 : 99,000,000

공급가액 : 90,000,000

부가가치세 : 9,000,000

## 4. 대금지급

가. 선금 :

나. 기성부분금 :

5. 계약보증금율 : 10%

6. 하자보수보증금율 : 10%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2003.9.1-2005.8.31)

8.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9. 특약사항 : 계약이행증권, 근재증권, 관제기입증명권, 하자이행증권.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특수조건 및 설계도에 의해 공사하도급 계약을  
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3년 06월 23일

수급인(갑)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103번지

상호 : 한양이엔지(주)

성명 : 대표이사 김형육 (印)



하수급인(을)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263-1

상호 : 아토

성명 : 대표이사 문상영 (印)



제	1	2	3	4	5	6	7
서	1	2	3	4	5	6	7

#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일반조건)** 수급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하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의 원칙에 따라 공사하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감독자)** ①갑은 을의 공사시공에 관하여 자신을 대신할 감독자를 선정하여 을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들의 지시 및 감독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서 또는 사양서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사시공에 대한 입회 또는 감독 및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2. 공사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 관한 사항

③을이 갑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갑 또는 감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대리인)** ①을은 갑 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을 결정하여 공사착공 전까지 갑 또는 감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이 선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관련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6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②을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③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대체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임의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제품을 대체 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갑이 을에게 지급할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명, 수량, 재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②갑으로부터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 을은 인수 후 일체의 보관, 운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을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분실분은 을의 비용으로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③지급자재 및 대여품은 공사의 완성,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지급재료가

있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착공)**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고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②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도급액의 변경)** ①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대,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공기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금액의 증감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감토록 하며, 신규 비목의 경우 갑이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단가에 하도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3. 을은 위에 명기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픽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검사 및 인도)**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④갑은 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이 계약 조건대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을 공사의 준공일로 본다.

**제13조 (대금지급)** ①을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내지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사업자일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2. 당해공사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모든 계약에 의한 미지급 기성 및 앞으로 지급할 대금을 본 공사관련 을의 임금체권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관련 을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을의 어음·수표의 부도(1차부도 포함), 영업정지, 면허취소

3. 을의 화의·회사정리신청(재산보전처분신청 포함)이 예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이행지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5조 (하자보수의무)** ①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일 경우 을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라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실액 배상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갑의 계약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상당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파산 및 어음,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아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을의 노사분규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을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때

7.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 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단,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21조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③갑이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 갑의 대여품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멀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갑의 지급자재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멀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17조 (을의 계약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상당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6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 16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 16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조 (환경/안전관리)** ①을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을의 종업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갑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을은 갑의 환경관리 방침내용을 이해하고 환경방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조 (품질관리)** ①을은 시공상의 하자나 과실 또는 고의로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명백한 갑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보증금중에서 갑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품질관리 방침내용을 이해하고 품질방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을은 품질계획서를 작성, 계약 체결후 공사착공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고 갑의 의견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품질계획서의 개정시도 이와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가 작고 단순공정일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 품질계획서의 작성을 면할 수 있다.

④을은 품질관리업무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담당자는 을이 수행하는 공사의 자체 품질검사, 도면관리, 자재관리, 부적합사항관리, 서류관리, 계측 및

시험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갑은 을의 계약업무 이행중 중대한 품질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은은 작업중지요청 접수후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을이 진다.

⑥은은 작업완료시에 갑의 품질요건에 따라 품질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은은 갑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감사,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을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이나 설비서류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출입하고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제 7항의 갑의 감사, 감독, 검사는 품질시공에 대한 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은은 자체 품질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⑨은은 계약기간동안 제작 또는 시공업무에 대해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이 인정할 경우 자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⑩은이 공급 또는 시공하는 KS 이외의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⑪은은 검사결과 불합격시 자신의 비용으로 최단기간내 시정 및 보완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⑫갑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불합격 또는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 갑의 권리는 유지된다.

⑬갑은 을이 제공한 기자재나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 이의 시정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⑭은은 갑으로부터 받은 도면중 공사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만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도면을 받는 즉시 구도면은 폐기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장 최신 도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계약보증금)** 갑과 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1조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단, 갑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하자보수보증금)** ①은은 계약서의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나,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국채 또는 지방채
4.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공사에 대한 하자가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보험가입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하도급 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억이며,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조 1항과 67조 1항에 의해 36%로 계상한다)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4. 갑이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안전관리비)** ① 갑은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공사책임한계)** ① 을의 공사가 마감되었다 하더라도 시운전이 완료되어 갑에게 인수 인계 전까지의 공사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의 공사수행도중 또는 수행완료 후 을의 공사가 타공사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작업복 대여)** 을은 공사수행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작업복은 공사완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업소유권)** ① 을은 목적물을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등(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을 시공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면,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침해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 (특수조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특수조건

**제 1조 (재하도의 승인)** 을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을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하도급자 교체)** 갑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재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였을 경우라도 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물량의 과다 등으로 당해 공사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3조 (하도급자 심사)** 갑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 4조 (현장상태 확인의무)** 을은 공사 수행중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면 또는 시방서상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2.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공사 수행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 5조 (고용보험료 인도에 관한 합의)** ①갑과 을은 고용보험에 같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당해현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본사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취득하고 을은 갑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준용하여 을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자체적으로 해야한다. 단 갑이 하도급 받은 공사일경우 원도급자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②갑은 갑과 을의 개산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을은 개산보험료 산출근거 및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제반서류(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실업급여 보험료원천공제대장, 고용보험 취득 상실자 명부등)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갑은 을이 제출한 개산보험료 산출근거를 근거로 을이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의 회사 부담분, 고용안정산업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을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개인부담분등 을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와 당사가 납부할 개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개산보험료를 선 납부한다.

④을은 갑이 확정보험료 납부시 을이 최종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며, 갑은 을에게서 공제한 확정보험료와 갑이 부담해야 할 확정보험료를 합산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납부해야 한다. 단, 갑은 을이 개산보험료 기간 중에 공사가 종료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을이 최종 부담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위약금)** 갑과 을은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VAT포함)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7조 (비밀유지 의무)** 을은 공사수행시 갑의 정보보호기준 및 정부공사보안관리기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만료(정산)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 8조 (하자 및 민원처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당해 하자로 인한 민원은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을의 처리지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 일체를 을이 즉시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 (2000년 문제의 보증)** 은 공사수행시 을이 제작 또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기자재나 설비에 2000년 문제로 인한 결함이 없음을 당해 기자재나 설비의 내구년한 동안 보증하며, 계약체결시 해당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 하자이행증권 및 보험가입등의 대체)** 계약 및 하자이행증권 발급, 보험가입등에 대해 계약조건 21조 1항 각호에 의한 방법을 이행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공사의 성격, 공사이행정도, 을의 당사 공사경험 등을 감안한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 11조 (보증인의 의무)** 갑·을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방은 보증인에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해석)** 계약서 표지나 본문의 내용과 특수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